

수원지방법원 2024. 5. 9 선고 2023가단51959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안 담당변호사 최병천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변진환, 이성근

변 론 종 결 2024. 3. 14.

판 결 선 고 2024. 5. 9.

주 문

1. 피고와 C가 2020. 11. 3.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한 증여계약을 1억 2,700만 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,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(다툼 없는 사실 포함)를 종합하면, 원고가 2017. 6. 22. C로부터 액면금 1억 4,000만 원, 지급기일 2018. 6. 20.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사실, C가 2020. 11. 3. 피고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아파트'라 한다)을 증여하는 계약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, C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 소유자인데, 단지 분양의 편의를 위해 C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이었으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오히려, 앞서 본 증거들과 을 3,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① 피고는 C와 법률상 부부 사이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, ② 피고가 아닌 C가 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종전 임차인으로서 우선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을 갖추었던 자인 점, ③ 피고가 마련한 분양대금 대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금이었던 점 등의 사정만이 인정될 뿐이다.

2.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

앞서 본 증거들과 갑 4호증의 1,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,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 피고가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,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, 이 사건 아파트의 2023. 3월 평균시세가 3억 5,5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인 1억 2,700만 원(원고는 공정증서상 채권액에서 피고가 이미 변제하였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뺀 위 금원만을 구하고 있다)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민규남

별지